

近代 轉換期 ‘國家’ 概念의 變化에 대한 考察*

- 『萬國公法』의 受容을 中心으로

미즈카이 유카리**·조재형***

- 목 차 -

- I. 서론
- II. 西歐 社會에서의 ‘國家’의 概念 形成과 『萬國公法』
- III. ‘만국공법’의 수용과 ‘국가’ 인식의 변화
- IV. 결론

|국문초록|

이 글의 목적은 근대 전환기에 국가 정체성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萬國公法』의 수용으로 인한 조선에서의 ‘국가’ 개념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는 데에 있다. ‘국가’라는 개념에 대한 인식은 그 시대의 국가 정체성과 연결되는데, 근대 전환기에 근대 국제법의 모태가 되는 『萬國公法』을 수용하면서 조선의 국가 정체성이 크게 변화를 보였다. 그렇기에 『萬國公法』을 수용한 시기의 조선의 정치적·사회적 배경을 살필 필요가 있음은 물론, 당시 조선이 어떤 국가로서의 모습을 목표로 하여 활동했는지 즉 국

* 이 논문은 2020년 12월 5일 한국어문교육연구회에서 주최한 229회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전국학술대회에서 ‘근대 전환기 만국공법의 수용과 국가 개념 인식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내용을 교신저자의 도움을 받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주저자,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 교신저자,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가로서 어떤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했는지를 살핌으로써 ‘국가’ 개념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II장에서는 서구 사회에서의 ‘국가’ 개념의 변화와 『萬國公法』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았다. III장에서는 ‘만국공법’ 수용 이전의 동아시아에 놓여 있었던 전통적인 華夷的 국제 질서의 성격에 대해 살피고 그것이 국가라는 인식을 하는 데에서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근대 전환기 ‘만국공법’을 경험하면서 전통적인 華夷的 질서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국제질서를 이해하고자 했던 노력들도 있었고, 독립된 국가로의 존립을 위해서는 독립 주권 국가라는 지위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부국강병에 힘을 기울이는 것도 필요하다는 인식도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새로운 움직임은 ‘국가’ 개념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었다.

주제어 : ‘국가’ 개념, 근대 전환기, 『萬國公法』, 華夷的 질서, 근대 국가, 주권, 국민

I. 서론

이 글의 목적은 근대 전환기에 국가 정체성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萬國公法』의 수용으로 인한 조선에서의 ‘국가’ 개념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는 데에 있다. ‘국가’라는 개념에 대한 인식은 그 시대의 국가 정체성과 연결되는데, 근대 전환기에 근대 국제법의 모태가 되는 『萬國公法』을 수용하면서 조선의 국가 정체성이 크게 변화를 보였다. 그렇기에 『萬國公

法』을 수용한 시기의 조선의 정치적·사회적 배경을 살필 필요가 있음은 물론, 당시 조선이 어떤 국가로서의 모습을 목표로 하여 활동했는지 즉 국가로서 어떤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했는지를 살핌으로써 ‘국가’ 개념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근대 전환기 직전에 동아시아의 조선, 중국, 일본은 기본적으로 쇄국정책을 유지했으나 19세기에 들어 이러한 대외 정책이 변하기 시작했다. 먼저 아편전쟁에 패한 청은 1842년 영국과 맺은 난징조약으로 인해 문호를 개방하게 되었고, 1854년에는 일본이 미국과 맺은 미일화친조약으로 인해 개항을 하게 되었다. 조선도 마찬가지로 개항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상황에 직면하였고 1876년 일본과의 朝日修好條規에 의해 개항하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동아시아에서 유지되어 왔던 전통적인 華夷의 국제 질서는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 변화는 서구와의 접촉에 의해 더욱 가속화되었다. 서구에서 시행하던 국제 조약 체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제질서와 접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에 이 새로운 국제질서를 알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萬國公法』¹⁾이었다.

조선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국가들은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국제질서의 모습을 이 『萬國公法』으로부터 배웠다. 즉 『萬國公法』은 이들 국가들에 수용되어 새로운 대외관의 근거로 자리 잡게 되었다.²⁾

그리고 이 ‘만국공법’의 수용은 새로운 국제질서의 모습을 알게 된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타국과 자국이라는 경계선을 명확히 함으로써 독립적인 ‘국가’라는 인식을 발전시키는 데에도 영향을 주었다. 서구에서

1) 『萬國公法』은 미국의 국제법학자 헨리 휘튼(Henry Wheaton)의 국제법 저서 『국제법의 기초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s)』를 중국에서 활동하던 미국인 선교사 윌리엄 마틴(William Martin)이 1864년에 한문으로 번역하여 청국 정부에서 출판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국제법을 의미하는 어휘로 사용할 때는 ‘만국공법’으로, 서적을 의미할 때는 『萬國公法』으로 달리 표기하고자 한다.

2) 김두진, 「동아시아 華夷論의 變容과 朝日의 萬國公法 수용의 他者認識」,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 2010, 5쪽.

이루어지던 국제 질서 내에서는 모든 국가가 법적으로 평등하고 각자의 주권은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는데, 이러한 국가 간의 평등의 관념은 곧 각 국가를 독립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華夷的 국제 질서에서 기타 국가들은 중국과 조공관계를 맺으므로 독립적이지 못한 상태였으나, 서구에서는 국가 간의 평등의 관념에 의해 각 국가는 독립적인 존재로서 서로의 주권을 침해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제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간 평등 관념은 현실적으로는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서구 국가에만 적용되는 것이었다. 즉 비서구인 아시아 국가들에는 이러한 평등 관념이 적용되지 않았다.³⁾

그러므로 조선을 비롯한 비서구의 나라가 ‘민국공법’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제질서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비서구 국가들이 서구 중심의 국제 사회의 대등한 일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서구가 내세운 문명 기준들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명 기준을 충족시키려는 노력은 조선에서의 국가 정체성의 변화로 이어졌다.

이러한 역사적 흐름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조선이 ‘민국공법’을 수용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에 ‘국가’ 개념에 대한 인식이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西歐 社會에서의 ‘國家’의 概念 形成과 『萬國公法』

오늘날 ‘국민 국가(Nation-State)’는 국민 공동체를 기초로 하는 국가를 말한다. 근대 국가⁴⁾의 한 부류이며, 프랑스 시민혁명을 거쳐 오늘날 가장

3) 김용구(2008 : 63)에 따르면, 『국제법의 기초』의 저자인 헨리 휘튼도 국제법이란 유럽과 기독교의 산물이며 문명 기독교 국가들의 법이므로 보편성이 없음을 그 누구보다 강조한 바 있다.

일반적인 국가 형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⁵⁾ 이러한 ‘국가’의 개념은 오랜 시간 인간 사회에서 조련되고 다듬어지면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 장에서는 서구 사회에서의 ‘국가’ 개념의 형성 과정과 근대 전환기 동아시아에 새로운 ‘국가’ 개념을 형성하게 한 『萬國公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자 한다.

1. 서구 사회에서의 ‘State’ 개념의 형성 과정

고대 그리스인들은 국가의 형태를 대체로 ‘ethnos’와 ‘polis’ 두 가지로 생각했으며, ‘ethnos’는 경제·문화적으로 원시 상태라는 점에서 아직 정치적 활력을 갖지 못했던 부족 단위의 血緣 共同體였다. 이에 반해 ‘polis’는 아테네와 같은 도시를 중심으로 정치적인 강제력과 도덕적 통합의 기능이 결합된, 배타적 이해관계의 市民 共同體였다.

한편 로마 제국을 하나의 정치 공동체로 묶는 역할을 했던 것은 로마의 법체계였다. 로마 법체계는 다중심적인 로마 제국의 현실을 반영해서 성립되었으며, 이러한 로마 제국의 현실을 표현하는 개념이 바로 ‘res

4) R.Koselleck/W.Conze. u. a.(1978: 2~3)에 따르면, ‘국가’ 개념의 결정적인 변화는 1800년경을 전후로 해서 나타났다. 프랑스 혁명이 발발하기 이전까지 ‘국가’라는 말은 적어도 독일에서는 신분적 의미를 갖고 ‘사치(Aufwand)’나 ‘관청(Amt)’과 같은 말이 덧붙여지거나, ‘영주국가(Fürstenstaat), 궁정국가(Hofstaat)’와 같은 말처럼 신분적 지배를 부인하는 말로 쓰였다. 그러다가 1800년경에 이르러 ‘국가는 “거의 모든 신분적 의미 함축들을 흡수하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요구를 하는 행위 주체 내지는 기관”이 되었다. 코젤렉이 ‘말안장시대(Sattelzeit)’라고 부르는 1800년경에 이르러 집합 단수로서의 국가 개념이 출현하고, 이후로는 이에 따라 현존하는 모든 경험적인 국가들의 의미가 통일되어 나갔다. 김기봉(2004: 12)에서 재인용.

5) 오늘날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국가’ 개념은 근대 서구의 ‘국민 국가(nation-state)’를 주로 참조하고 있다. 그것은 서구 사회에서 ‘폴리스, 봉건제 국가, 영토 국가’에 이어 출현한 근대 국가의 한 유형으로 ‘주권, 영토, 시민권, 민족주의’ 등의 특징을 갖는다고 설명된다. 그런데 이 서구의 ‘State’ 개념에 대해, 동아시아 지역에서 번역어로 사용하고 있는 ‘國家’라는 어휘는 그 자체로 어울리지 않는 면이 있다. 서구적 관점에서 ‘國’과 ‘家’는 각기 ‘公’과 ‘私’로 완전히 분리된 영역에 있는 것이어서 양자를 한 단어로 묶는 것이 어색하게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publica⁶⁾이다. ‘res publica’란 공동의 이해 관계와 공동의 가치 체계를 추구하는 국가⁷⁾를 지칭했다.

로마 제국 멸망 후, 중세의 분열적이고 다층적인 국가 현실은 ‘국가’ 개념의 분절화를 낳았다. 중세에서는 영토와 주민의 실질적인 결합 그 자체가 ‘국가’에 해당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하에서 중세에서 ‘국가’를 의미하는 용어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12~13세기 서구 사회에서의 도시의 성장은 봉건 질서의 분열을 가져왔으며, 도시민들은 사회적 신분에 따라 구성되는 ‘신분 국가(Ständestaat)⁸⁾’를 요구했다. 봉건 체제와는 달리 신분 국가는 신분 집단 간에 대결하는 이원적 지배 형태를 취했다. 그러나 16세기 말 이래 절대 군주정의 등장과 함께 영토의 대부분에서 이러한 신분 집단의 권력이 와해되었고 중앙집권화가 구체화되면서 근대 국가의 형성이 태동하였다.⁹⁾

16세기, 즉 중세 말기 서구 사회에서 ‘Status’는 ‘신분’이나 ‘국제(國制)’라는 개념을 의미¹⁰⁾하였다. 라틴어 ‘Status’의 파생어인 이탈리아어의

- 6) 직역하면 ‘공공의 일’을 뜻한다. <21세기 정치학대사전>에 따르면, ‘국가’ 또는 ‘공화국’이라고 번역된다. 한편 ‘개인적인 것(res privata)’과 반대로 ‘공익(公益), 공법(公法)’을 가리키고, 다른 한편으로 개인적 권위에 기초한 ‘왕정(王政), ‘원수제’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쓰였다. 고대 로마에서 키케로(Marcus Tullius Cicero)에 의해 정치 공동체의 향도 이념으로서 확립되어 중세의 ‘레스 퍼블리카 크리스티아나(기독교 공동체), 르네상스기 이후의 ‘리퍼블릭’, 근대의 프랑스 ‘공화제’ 등의 개념 모체가 되었다.
- 7) 김기봉(2004: 10)에서는 로마인들에게 공화국으로서 ‘국가’란 ‘polis’와 같은 구체적인 장소를 의미한 다기보다는 ‘patria(조국, 고향)’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는 법과 제도에 의해 운영되는 추상적인 나라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 8) <사회학사전>에 따르면, 귀족 등의 광범위한 신분 계급이 국가의 업무 속에서 통치자에 의해 고려되는 권리들을 소유하는, 서유럽의 일부 국가(프랑스, 프리시아)의 후기 봉건제 국가 형태이다. 1789년 프랑스 혁명에서 세 가지 신분의 삼부회는 각 신분 대표자들의 회합이었고, 이러한 집단의 출현은 유럽의 정치에 의해 채택된 민주적, 참여적인 길에서 중요한 요소로서 간주되고 있다.
- 9) 김기봉, 『국가란 무엇인가: 개념사적인 고찰』, 『서양사론』, 한국서양사학회, 2004, 11~12쪽.
- 10) Wolfgang Mager(1968: 26)에 따르면, ‘status’는 16세기 말까지 ‘국가’보다는 지배자로서 ‘왕의 지위(status regalis)’와 정치 공동체의 지배 형태로서 ‘정체(신분, forma politicae, species politicae)’라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의미를 함께 내포했다. ‘status’의 파생어인 ‘state’의 개념도 이와 비슷했는데, ‘state’의 이러한 이중성과 관련하여 전자가 군주정의 근간을 이루었다면, 후자는 공화주의적 기원을 형성했다. 김기봉(2004: 13)에서 재인용.

‘stato’, 스페인어의 ‘estado’, 프랑스어의 ‘estat’, 영어의 ‘state’ 등의 어휘들은 애초에 ‘상태’, ‘신분’ 등을 의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¹¹⁾ 그런데 이들 어휘들은 ‘상태, 경우, 몸가짐’ 등의 의미에서 출발하여 ‘지위, 명성, 위대함, 위엄, 궁정, 통치, 지배’ 등의 의미 변화를 겪으면서 ‘국가’의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다. 이들 어휘의 개념 변화 과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어휘로 독일어의 ‘Stoat’가 있다.¹²⁾

- (1) ① 15세기 ‘Stoat’는 ‘상태, 경우’라는 기본 어의를 지녔음.
- ② 15세기 이후, 여러 독일어 문헌에서 ‘상태, 경우, 신분, 지위, 직무, 관직, 명성, 고위직(高位職), 신하, 국제(國制), 제국의 상태, 통치’의 의미로 사용되었음.
- ③ 17세기부터 ‘국교회계(Stoatshoushalt)’라는 부차적인 어의 획득.
- ④ ‘통치(권)’, ‘(군주의) 위신’, ‘(군주의) 존엄’, ‘재정’, ‘재정 행정’ 등의 의미 획득.
- ⑤ 국가 영역이나 ‘국가의 권력’이라는 개념에 접근.

‘Stoat’는 15세기 ‘그림(Brothers Grimm)’ 사전에서 ‘상태, 경우’라는 기본 어의를 지닌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 여러 독일어 문헌에서 ‘상태, 경우, 신분, 지위, 직무, 관직, 명성, 고위직(高位職), 신하, 국제(國制), 제국의 상태, 통치’의 의미로 사용된 용례가 확인된다. 이렇듯 ‘통치’의 의미를

11) 아놀드·오스카·마이어(1982: 164)에 따르면, 14세기 이탈리아어인 ‘Stato’는 ‘통치’와 같은 뜻이었을 뿐만 아니라 ‘힘(권력)’과도 유사한 의미를 지녔다. 14세기 영어의 ‘State’는 ‘(公的인) 직권’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고 ‘힘(권력)’의 개념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17세기 프랑스 대제상인 리슈뢰도 동일한 의미로 프랑스어의 ‘Etat’를 ‘군주의 권능’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12) 아놀드·오스카·마이어(1982: 157~158)에 따르면, 이러한 어휘 의미의 변화에는 대개 3~4세기의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언어학적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것이며 역사적·정치적인 현상과 더불어 인식해야 그 설명이 가능하다. 이에 비해 독일어 ‘Stoat’는 15~17세기 동안 급격한 어의 변화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지니게 된 결과, ‘Stoat’의 어의는 이미 ‘res publica(국가)’의 개념에 지극히 접근되었지만 다른 언어와는 달리 독일어에서는 17세기가 되어서야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¹³⁾

한편 17세기 독일에서는 군주가 귀족의 과세 동의권(課稅 同意權)과 그들이 장악하고 있었던 세무 관련 행정에서 그들을 배제함으로써 재정의 일원화에 의한 절대주의 국가가 형성되었고, 이 과정에서 ‘통치(권), 재정(권), 최고의 통치 관청’ 등의 권리 등을 군주가 장악하게 되었는데 이는 곧 왕권 강화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Stoat’는 ‘국고 회계(Stoatshoushalt)’, 즉 ‘국고의 수입과 지출의 관리’라는 부차적인 어의를 획득하였고 왕권 강화와 함께 ‘통치(권)’, ‘(군주의) 위신’, ‘(군주의) 존엄’, ‘재정’, ‘재정 행정’ 등의 의미까지 확장되었고, 더 나아가 ‘최고의 통치 관청’의 의미도 획득하게 되었다. 이러한 의미의 확대는 ‘Stoat’가 군주가 지닌 모든 권력 즉, 군주로서의 통치권, 존엄, (군주의) 이익, 재정(권) 등의 모든 개념을 포괄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Stoat’는 ‘국가 영역’이나 ‘국가 권력’이라는 개념에 접근하게 되었다.¹⁴⁾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2) ‘Stoat’의 의미 영역 확대

15세기	17세기	
상태, 경우, 신분, 지위, 직무, 관직, 명성, 고위직, 신하, 국제, 제국의 상태, 통치 등	⇒ 절대주의 국가 형성	왕권 강화
	국고 회계 (Stoatshoushalt)	국가 영역 또는 국가 권력

그런데 절대주의 시대에서 통치자의 독점적 지위가 커질수록 관료 조

13) 아놀드·오스카·마이아, 『국가라는 개념의 역사』, 『광장 110』, 세계평화교수협의회, 1982, 158쪽.

14) 아놀드·오스카·마이아, 『국가라는 개념의 역사』, 『광장 110』, 세계평화교수협의회, 1982, 163쪽.

적은 방대해지게 되었다. 이는 절대주의의 군주는 기능적으로 신하들에게 의존하게 되고, 군주의 ‘사적인’ 권한은 ‘공적인’ 또는 ‘국가의’ 권한으로 전환되는 현상을 야기하였다. 따라서 군주의 폭력 독점권은 사회의 기능 분화와 여러 사회 세력 간의 경쟁과 갈등을 통해 점점 ‘사회화’가 되는 방향으로 발전되었다.

한편 이 시기에 하나의 통치 단위가 국가가 될 수 있는 필요조건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 (3) ① 폭력의 독점을 가능하게 하는 상비군
- ② 전국적인 행정력을 담당할 중앙 관료 조직의 존재
- ③ 위의 둘을 유지시킬 수 있는 국가 재정

왕실 재정과 국가 재정의 분리는 절대주의 시대에서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나, 왕도 국가의 예산 안에서 정해진 금액을 받으며, 이에 맞추어 지출을 하는 과정을 통해 국왕의 ‘조세 독점권의 사회화’ 과정 역시 필연적으로 발생하였다.¹⁵⁾

17세기 이후 서구 사회의 절대 군주는 상승하는 시민 계급과 하강하는 귀족 사이의 평형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독점권을 최대한 넓혀서 견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절대 군주는 자신이 소유한 재정적 독점권을 이용해서 사회적 생산의 일부를 귀족들에게 부여했으며, 이는 시민 계급의 반발을 야기했다. 이러한 시민 계급의 반발은 프랑스 혁명 전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혁명 발생 전의 프랑스에서는 시민계급이 모든 개혁의 시도가 좌절된 후 왕에게 귀족 특권의 폐지를 요구했으나 왕은 시민 계급의 요구를 묵살했고, 이로 인해 시민 계급과 귀족 사이의 힘의 균형이 깨

15) 노르베르트 엘리아스(Norbert Elias), 박미희 역, 『문명화 과정 II』, 한길사, 1999, 175~185쪽.

짐으로써 절대 왕정의 종말이 도래하였다. 이러한 역사의 변화는 국가의 주권이 국왕에서 국민에게로 이양되는 국민 국가의 시대가 왔음¹⁶⁾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럽의 근대성은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권위를 부정하는 세속화의 과정 속에서 형성되었다. 이러한 세속화 과정을 통해 이전의 지식과 가치 체계의 초월적 구도가 인간 주체의 내재적인 구도로 전환됨으로써 근대적 자아가 탄생했는데, 근대적 자아는 스스로가 세계의 중심이며 인식과 행위의 자유로운 주체임을 선언했다. 그러나 근대적 자아는 만인의 만인에 대해 투쟁을 벌이는 내전 상태에 빠지는 위험에 직면하였고, 이러한 위험에 처한 인간들을 통제하고 훈육할 수 있는 새로운 초월적인 권력자를 대표로 세워야 한다는 역설적인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론에 따라 정치 공동체 내에 존재하는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권위로서 주권 개념이 발생했으며, 이는 주권 권력을 가진 근대 국가의 태동으로 이어졌다.¹⁷⁾

한편 근대 국가 태동까지의 과정에서 ‘국가’의 개념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그 의미 영역의 확장을 거치면서 변모하였다. 즉 고대 로마 시대의 ‘국가’는 공동의 이해 관계와 공동의 가치 체계를 추구하는 추상적인 개념이었다. 로마 제국 멸망 후, 중세의 분열적이고 다층적인 사회 구조를 겪으면서 ‘상태’, ‘신분’ 등의 개념을 내포하다가 근대 이전에 절대주의 국가와 왕권 강화를 겪으면서 ‘지위, 명성, 위대함, 위엄, 궁정, 통치, 지배’ 등으로 개념의 확장 과정을 겪게 되었다. 이후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국가의 주권이 국왕에서 국민에게로 이양되는 국민 국가의 시대를 거치면서 주권 개념이 발생하면서 ‘국가’는 국민 주권의 개념을 내포한 근대적 개념으로

16) 김기봉, 「국가란 무엇인가: 개념사적인 고찰」, 『서양사론』, 한국서양사학회, 2004, 25.

17) 김기봉 위의 논문 32쪽.

정착하게 되었다.

2. 『萬國公法』에서의 ‘nation’ 개념

『萬國公法』은 미국의 법학자 헨리 휘튼(Henry Wheaton)의 『국제법의 기초(Elements of international laws)』¹⁸⁾를 청나라에서 활동을 한 선교사 윌리엄 마틴(William Alexander Parsons Martin)이 한역(漢譯)하여 발간한 책이면서 19세기 중후반 동아시아에서 국제법을 지칭하는 일반적 명칭이었다.¹⁹⁾ 이 시기에 동아시아에서 책의 명칭이 국제법을 지칭하는 어휘로 쓰였다는 점은 『萬國公法』이 동아시아에 끼친 영향력이 막대했음을 보여주는 일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근대 전환기 동아시아에 새롭게 수용된 서구 사회의 ‘국가’ 개념은 『萬國公法』에서 ‘국가’ 개념이 어떻게 기술되었는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萬國公法』의 ‘국가’ 개념은 원저인 헨리 휘튼의 『국제법의 기초』에서 기술하고 있는 다음의 내용에서 살펴볼 수 있다.

(4)²⁰⁾ ① nations 사이에 보편적인 법은 없다: nation²¹⁾들에 단일한 법이

18) 민회수(2020: 193~194)에 따르면, 『萬國公法』의 원저인 헨리 휘튼의 『국제법의 기초』는 첫째, 법은 주권자의 명령으로 인간이 만드는 것이라는 실정법주의와 둘째, 신이나 대자연 등 인간보다 절대적 존재를 법의 주체자로 상정하는 자연법주의의 두 법철학을 절충시킨 절충주의적 입장의 법학서이다.

19) 이원석, 「만국공법의 두 가지 지평과 구한말 유학」, 『한국학연구』,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8, 600쪽.

20) 윤영실(2019: 154~155)에서 재인용.

21) 윤영실(2019: 159~160)에 따르면, ‘nation’의 어원적 함의는 라틴어 ‘nasci’, 곧 출생(지)과 관련이 있다. ‘polis’나 ‘civitas’가 정치적 공동체를 지칭했다면 ‘nation’은 오히려 출신지가 다른 사람들을 뜻하였기에 정치적 권리들과는 관련성이 떨어졌고, 이러한 ‘nation’의 용법은 중세까지 이어져 한 국가도 구성원의 출신 지역에 따라 여러 개의 ‘nation’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방식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nation’이 정치적 의미를 획득한 계기는 프랑스 혁명이었으며 이때 ‘nation’은 절대 군주제에서 국민 주권 시대로의 전환을 겪으면서 종래의 용법에서 벗어나, ‘제왕적 주권(sovareignty of prince or ruler)’과 ‘인민주권(sovareignty of people)’ 사이의 절충안으로서, 주권을

있는가? 분명 세계의 모든 nation들과 국가들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의 법은 없다. 공법(the public law)은, 몇몇 예외들을 제외하고는, 유럽의 문명화되고 기독교적 people이나 유럽적 기원을 지닌 people들에 제한되어 왔고, 여전히 그러하다.

② 국제법의 정의: 문명화된 nation들 사이에서 이해된 바로서의 국제법은, 이성이 정의에 조응하여, 독립적인 nation들 사이에 존재하는 그 사회의 본성으로부터 연역해 낸 행위의 규칙들로 이뤄져 있다고 정의될 수 있다.

③ 국가는 또한 하나의 nation과도 구분된다. 국가는 동일한 최상의 권위에 종속되는 서로 다른 인종들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스트리아, 프러시아, 오토만 제국들은 다양한 nations과 peoples로 이루어져 있다. 또 동일한 nation이나 people이 몇 개의 국가들에 복속될 수도 있다. 폴란드인들이 오스트리아, 프러시아, 러시아의 지배에 각각 복속되어 있듯 말이다.

(4)의 기술은 다음과 같이 풀이할 수 있다. 즉, ‘주권(Sovereignty)’은 특정 국가 내에서 행사되는 ‘최고 권력(supreme power)’으로서, 대내적 주권과 대외적 주권으로 구분된다. ‘대내적 주권(Internal sovereignty)’은 헌법 등에 의해, 한 국가의 people에 내재하거나 그 지배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며, ‘대외적 주권(External sovereignty)’은 한 국가가 다른 국가 등

담지하는 일종의 ‘추상적 법인(法人, legal person)’으로 그 개념이 변모되었다.

한편 윤영실(2019: 155~156)에 의하면, 헨리 휘튼의 『국제법의 기초』에서는 ‘nation’을 야만과 문명, 기독교와 이교도에 상관없이 개개의 모든 인간 사회를 지칭할 때 사용하였다. 『국제법의 기초』에서는 ‘nation’과 ‘state’를 엄밀히 구분했는데, ‘nation’은 아직 주권의 자격을 의미하지도 않고 그 자체로 우월한 문화를 가리키지도 않았다. 반면 주권은 ‘nation’보다는 ‘state’에 귀속되며, 특히 한 국가의 ‘외적 주권(external sovereignty)’은 국가 간의 다양한 정치 관계 속에서 ‘승인(recognition)’ 될 때에만 유효한 것으로 보았다.

과의 관계에서 갖는 독립성과 관련이 있으며 국제법(international law)²²⁾에 의해 규제된다. 또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의해 ‘국가로서의 승인’을 받거나 일반 국제사회(general society of nations)로의 편입 여부는 다른 국가들의 의해 결정되며, 그 과정에서 한 국가의 대내적 주권은 다른 국가들에 의해 결정되지 않지만 한 국가의 대외적 주권은 다른 국가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²³⁾

한편 국제법을 가리키던 라틴어 ‘jus gentium’이 영어에서 ‘international law’라고 번역되었다는 것은 ‘nation’에는 ‘people’보다 법적 주체로서의 의미가 강하게 부여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의 ②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국제법의 기초』에서는 ‘nation’을 모든 사회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국제법을 모든 nation들이 아닌 문명화된 nation들 간의 고유한 법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국제법의 기초』에서는 서구적 문명과 ‘nation’을 개념적으로 유사하게 보는 것으로 판단된다.²⁴⁾

한편 『국제법의 기초』에서의 ‘nation’의 개념은 국제법이 기독교적 보편주의의 자연법주의에서 현실 국제정치의 실정법주의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례이며, 따라서 휘튼은 국제법(international law)이 자연법(law

22) 윤영실(2019: 155)에서는 헨리 휘튼의 『국제법의 기초』에서의 국제법의 정의에 대해 “국제법의 권원(權原)이 모든 인간에게 공통되는 보편적 자연법 내지 신으로부터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의 구체적 정치체들, 그것도 모든 nations들이 아닌 문명화된 국가들의 nation들 사이에서 이뤄진 인위적 합의로부터만 도출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23) 김현철, 「개화기 『만국공법』의 전래와 서구 근대주권국가의 인식, 『한국학』,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134쪽.

24) 헨리 휘튼의 『국제법의 기초』와 유사하게 동시기에 동아시아에 영향을 끼친 것이 블룬칠리의 『일반국가론(Allgemeine Statslehre)』이다. 윤영실(2019: 157~158)에 의하면, 블룬칠리의 『일반국가론』에서는 ‘nation’을 무엇보다 국가를 창조하는 정치적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정치적 공동체로, ‘people’을 여러 세대의 축적된 문화와 가계의 연속을 통해 만들어지는 역사-문화적 공동체로 규정하고 있다. 블룬칠리의 『일반국가론』에서는 ‘nation’과 ‘people’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는데, 『일반국가론』은 가토 히로유키(加藤弘之)의 『國法汎論』을 통해 동아시아에 전해졌으며, 아즈마 헤이지(吾妻兵治), 량차치오(梁啓超)를 거쳐 김상헌, 안중화 등의 ‘국가론’ 번역과 신채호의 ‘국민·민족’ 개념 구분에게까지 영향을 끼쳤다.

of nature)이 아니라 nation들, 그중에서도 서구 nation들 사이의 법(law between nations)이라는 점을 강조했다.²⁵⁾

한편 김용구²⁶⁾는 『萬國公法』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제질서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5) ① 실정법주의(positivism)
- ② 유럽중심주의(Eurocentrism)
- ③ 팽창주의(expansionism)

즉, 김용구는 『萬國公法』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제질서의 특징을 실정법주의(positivism), 유럽중심주의(Eurocentrism), 팽창주의(expansionism)에 입각한 폭력의 규범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용구²⁷⁾에 따르면, ‘실정법주의’는 법을 국가 의사인 합법성으로 귀착시키는 법적 태도와 입장을 의미한다. 18세기 후반 유럽에서 이미 국제법을 유럽의 공법이라고 지칭하였으며, 이후 국제법을 ‘유럽 공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이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또 다른 특징인 ‘유럽중심주의’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유럽이 비유럽 지역을 지배하기 시작하자 이 용어는 ‘문명(civilization)’이라는 용어로 대체되었다. 즉 유럽의 ‘공법’은 문명국들의 법으로 그 지위가 바뀌었고 비유럽 국가들은 국제법의 주체가 아니고 제한된 의미의 주체로 간주되었다. 즉 『萬國公法』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국제질서에 따르면 유럽 외의 국가는 기존의 문명국에 의해 문명국으로 판단

25) 윤영실, 「헨리 휘튼과 J. C. 블룬칠리의 네이션 개념과 마틴의 번역서 『만국공법』·『공법회통』—국제법과 식민주의적 폭력, 네이션 개념의 관계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사연구』, 민족문화사연구소, 2019, 165쪽.

26) 김용구, 『만국공법』, 도서출판 소화, 2008, 41~53쪽.

27) 김용구, 위의 책 41~53쪽.

되어야만 이 새로운 국제질서로의 편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앞의 실정법주의와 유럽중심주의에서 유래되는 것이 바로 팽창주의이다. 유럽의 공법은 유럽 국가들의 세계 팽창을 합리화하고 부추기는 법적 도구로 기능하였던 것이다.

III. ‘만국공법’의 수용과 ‘국가’ 인식의 변화

동아시아에서의 전통적인 화이적 국제 질서에 의해 이에 속하는 행위자들은 중국의 인정을 받음으로써 행위자로서 존재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행위자는 위계적으로 존재하는 불평등한 관계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국가 간의 관계에 속한 동아시아 나라들이 ‘만국공법’에 의한 새로운 국제 질서에 편입한다는 것은 중심과 주변이라는 강한 세력 관계가 다시 수정되고 재편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내외적으로 적지 않은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1. ‘만국공법’ 수용 이전 조선에서의 ‘국가’ 개념의 인식

‘만국공법’ 수용 이전의 동아시아에서는 전통적인 華夷의 국제질서가 華夷思想²⁸⁾에 의해 이루어져 있었다. 이 華夷思想은 문명을 지닌 漢族을 중심으로 삼아, 그 이외 민족들의 문화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華夷의 국가 질서의 핵심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8) 이홍중 외(2000: 166, 168)에 따르면, ‘화(華)’는 ‘우수한 문명을 지닌 한족(漢族)’을 가리키지만 ‘이(夷)’는 ‘짐승과도 같은 미개 민족으로서 한족 주변에 분포하고 있는 이민족을 가리킨다. 그리고 ‘화(華)’와 ‘이(夷)’의 구분은 ‘예법(禮法)’의 유무, 다과(多寡)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6)²⁹⁾ ① 첫째, 이 국제질서의 행위자들이 행위자로 자처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그런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

② 둘째, 제후들은 정기적으로 중국에 조공을 행해야 하며, 제후들의 국왕들은 중국 황제에게 表와 貢을 바쳐야 한다.

華夷思想 체계에서는 국가 간의 관계가 천자, 제후, 배신 등에 의해 규정되는 서계적인 특징이 있었다. 이러한 중국 중심의 세계관 속에서 중국과 기타 국가 간의 조공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불평등의 관계³⁰⁾를 형성했다.

한편 중국과 다른 국가 간의 전통적 관계는 중국과의 지리적 위치 관계와 문화적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일례로 조선(朝鮮)은 중국과의 위치 관계에서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장 근접한 곳에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정치·군사·문화적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조선도 이러한 관계를 인정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事大字小’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事大字小’는 ‘큰 것이 작은 것을 어여뵈 여기지 않는다’면 작은 것은 큰 것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표현으로 집약되는 ‘禮’라는 문화적·도덕적 질서가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³¹⁾

이러한 중국 중심의 국제 사회에 속했던 조선에는 아직 근대적 ‘국가’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이 시기 조선에 ‘국가’ 개념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즉, 조선에는 근대적 국가 개념 대신 중국 중심의 전통적 국가 개념만이 존재했다. 김성배³²⁾에서는 이러한 전

29) 김용구(2008 : 25)에서 인용.

30) 최종석(2017 : 11~12)에서는 동아시아에서의 전통적인 중국과 기타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해 지금의 시각에서 보면 이러한 관계가 불평등한 관계로 볼 수 있지만, 당시에는 ‘국가·주권·평등’의 이념과 가치가 부재했으며, 따라서 이러한 중국과 기타 국가 간의 관계는 자연스러운 것이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31) 김용구, 『만국공법』, 도서출판 소화, 2008, 27쪽.

통적 국가 개념과 근대적 국가 개념 사이의 결정적 차이점은 주권 사상과 ‘국민’ 관념의 유무에 있다고 보았다. 즉 조선에서의 전통적 국가 개념도 서구 사회와 마찬가지로 정치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긴 했으나 조선의 그것에는 주권 사상과 국민 관념³³⁾을 내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조선의 전통적 국가 개념에는 왜 이들 요소가 부재했는가에 대해서는 중국 중심의 華夷的 국제 질서에서 중국이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했는가와 깊은 관련이 있다.

전통적인 華夷的 국제질서에 있어서 중국은 天子로서 자기를 중심으로 두고, 타자 즉 중국 외의 나라들은 천자의 덕이 미치지 지역인 천하와 그 외의 천자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지역인 야만의 땅으로 구분하였으며, 특히 후자에 관해서는 논의의 대상으로 삼지도 않았다. 즉 천하의 범주 내에 속하는 ‘안’과는 구분되는 ‘밖’에 존재하는 것은 정치적 실체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는 華夷的 국가 질서의 핵심적인 특징을 기술한 (6)의 ①과 관련이 있다.

이와 같은 관계 속에서 중국은 천하에 속하는 중국 외의 나라들은 모두 屬邦으로 여기며 그 하나하나를 독립된 나라로 보지 않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중국의 국가 인식은 조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으며, 따라서 조선의 사대부들은 중국을 중심으로 두고 자신의 위치를 의식한 개념으로 조선을 ‘弊邦, 小邦’ 등으로 불렀다.³⁴⁾

이처럼 동아시아의 화이적 국제 질서 안에서는 주권 사상이 포함된 근대적 성격의 국가는 애초에 존재할 수가 없었다. 이 질서 내에서 ‘국가’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면, 그것은 주로 자신의 조정이 통치하는 공간 전체

32) 김성배, 「한국의 근대국가 개념 형성사 연구」, 『국제정치논총』 한국국제정치학회, 2012.

33) 전통적 국가 개념에서는 군주를 곧 국가로 보았기 때문에, 근대적 개념에서의 ‘국민’의 개념은 부재하였다.

34) 김성배 위의 논문 10~11쪽.

를 가리키는 경우이거나, 백성에 대비하여 군주를 중심으로 하는 통치 조직으로서 조정 전체를 의미하는 경우에 한하였다.

한편으로는 이처럼 전통적 국가 개념에 주권 사상이 부재했던 이유를 조선이 화이적 국제 질서에서 천하라는 중국 황제와의 관계와 왕조라는 백성들과의 관계라는 이중적 관계³⁵⁾로도 설명할 수 있다. 즉 조선은 대외적으로는 황제(천자)의 신하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영토와 신민을 보유한 군주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대내적으로는 보이지 않았고 군주의 위상만을 지닐 수 있었다. 중국은 대외적으로는 조선에게 신하로서의 행동을 요구했으나 이것은 내정간섭 또는 영토화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대외적인 공간에서만 신하의 관계를 유지하면 대내적으로는 군주의 위상만 지닐 수 있었다.³⁶⁾

그렇다고는 해도 조선은 외교적으로는 어디까지나 중국의 신하로서 행동해야 했기 때문에 조선의 주권 행사는 항상 중국에 의해 제한되었고, 이는 구체적으로는 ‘人臣無外交’의 개념으로 실현되었다.

중국에서의 ‘외교’라는 용어는 『禮記』에서 ‘人臣無外交’, 곧 ‘남의 신하된 자는 외교를 할 수 없다.’는 뜻으로 처음으로 등장한 이후 외교 사절의 사적인 행위를 뜻하는 금기적 개념으로 쓰였으며, 조선에서도 동일하게 ‘人臣無外交’ 관념에 따른 예물 수수 등 외교 사절의 금지된 사적 행동을 의미했다.³⁷⁾ 이 ‘人臣無外交’의 개념은 화이적 국제 질서에서는 기본적인 명제였다.³⁸⁾ 중국과 事大字小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대국과의 힘의 절대적 열세에서 국가 존립의 문제를 해결해온 조선은 1870년대에 들어서면서 새

35) 이러한 이중적 관계는 ‘군신 관계(군주+신하)’를 지칭하기도 한다.

36) 최종석, 「13~15세기 천하질서하에서 고려와 조선의 국가 정체성」, 『역사비평』, 역사비평사, 2017, 11~12쪽.

37) 민희수, 「19세기 말 한국에서의 ‘外交’ 용어의 활용 양상」, 『진단학보』, 진단학회, 2018.

38) 김용구, 『만국공법』, 도서출판 소화, 2008, 35쪽.

로운 역사적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조선은 1876년 일본과의 朝日修好條規에 의해 강제 개항을 겪으면서 새로운 근대적 국제 질서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그때까지 조선을 짓누르던 전통적 화이적 질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지배 계층의 주된 고민거리가 되었다. 이에 조선의 지배 계층에서는 小中華 사상³⁹⁾을 가지고 조선을 세계⁴⁰⁾ 문화의 중심으로 보려는 시도도 있었다. 그러나 이 小中華 사상은 단지 문화적 관념 세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정치·군사적인 면으로 확대시키지 못했다.⁴¹⁾ 즉 어디까지나 화이적 체계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근대 전환기 초기에 조선은 이러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으나 새로운 근대적 국제 질서를 겪으면서 중국 중심의 국제 질서와 외교 정책에 대한 사고 방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였다. 이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이 『萬國公法』을 접하면서 전통적 국가관과는 다른 내용을 담은 『萬國公法』은 이러한 사고 방식의 변화에 시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국제 질서 하에서 세계를 바라보던 조선의 지배 계층은 개항과 서구의 국가들에 의한 통상 압력에 직면하게 되면서 서구 세계는 어떤 원리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생겼다. 따라서 이를 위해 다양한 서구의 국제법 이론을 수용하기 시작하였고, 서구의 근대 국제 체제의 원

39) 17세기에 접어들면서 종래 중화문명의 정통을 계승한 한족의 명이 이방의 오랑캐인 여진(女眞)의 청에 의하여 멸망한 이후 청의 군사적·정치적 지배하에 조선이 놓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의 유자와 관료들 사이에 반청(反淸), 숭명(崇明)의 감정이 고조되어 조선의 중국관에 변화가 생겼다. 여기서 나타난 것이 소중화 사상이었다. 소중화 사상에서는 명이 가졌던 중화문화의 정수(精粹)가 주자학을 받아들인 조선으로 계승되었다고 여겨, 조선이야말로 진정한 중화국으로서 세계문화의 중심국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었다(유근호, 2002 : 197).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전까지의 중국관에서 소중화 사상으로 인식적 변화가 생기기는 했으나 이러한 인식은 문화적 차원 만에 한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즉 소중화 사상은 문화적으로는 조선이 청보다 우월하다고 여겼지만 대외적으로 정치·군사의 면에서는 청에 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김두진, 2010 : 9).

40) 여기에서의 '세계'는 중화 사상의 세계를 의미한다.

41) 김두진, 「동아시아 華夷論의 變容과 朝日의 萬國公法 수용의 他者認識」,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 2010, 9.

리로서 ‘민국공법’의 질서를 수용하는 일은 조선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국가들에 있어서 지금까지 논의해온 전통적 세계관에서 새로운 세계관으로의 전환을 의미했다.

2. 『萬國公法』 상의 ‘nation’ 개념의 이해와 수용 방식

앞에서 논의한 ‘민국공법’의 특징은 『萬國公法』⁴²⁾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 질서의 양면성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萬國公法』이 한편으로는 서구 세계에 존재하는 ‘보편적 도리’로서의 성격을,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약육강식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며, 결국은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게 되므로 이러한 국제 질서 안에서는 강자가 되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萬國公法』이 갖는 양면성을 일찍 이해한 일본⁴³⁾은 이러한 위기 의식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러한 인식은 외교정책에 있어서 서구와 조선에 대해 상반된 정책으로 구체화되었다. 일본은 메이지 정부가 수립된 직후부터 서구와는 우호 관계 수립을, 그리고 한편으로는 국권 확

42) 윤영실(2019: 164~167)에 따르면, 『국제법의 기초(Elements of international laws)』에서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해 헨리 휘튼이 주장한 바는 모든 nations에 공통된 법은 없으며, ‘international law’는 기독교 문명 국가들의 nations 사이에서 체결된 조약과 법령, 국제재판소의 판결, 협정들과 같은 실정적인 법들을 원천으로 삼을 뿐이라는 것이었는데, 윌리엄 마틴은 이를 ‘萬國公法’으로 번역함으로써 마치 모든 ‘네이션들(萬國)’에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도리나 이치가 있다는 오해를 야기하였다. 또한 헨리 휘튼의 ‘nation’에 대해서 마틴의 『萬國公法』에서는 헨리 휘튼이 주장했던 실정법주의보다 자연법을 강조하는 쪽으로 번역되었다. 즉, 헨리 휘튼은 국제법이 특정한 ‘nations’의 법임을 강조하면서도, 문명화된 ‘nations’의 법이야말로 이성(reason)과 정의(justice)에 조응하며 결국 세계의 나머지 nations도 따르게 될 ‘우월한’ 법임을 상정하였지만, 윌리엄 마틴은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번역에서 이러한 내용을 적나라하게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국제법을 굳이 두 가지로 나누어 보편적 자연법의 요소(當然, 度理, 公義)와 실정법적 요소(商定, 辨明, 共許)가 두루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윌리엄 마틴의 오역은 동아시아의 개화 지식인들이 한동안 ‘민국공법’을 유교적 천리(天理)의 연장선 위에서 이해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43) 기도 타카요시(木戶孝允, 1833~1877)는 그의 일기(1868년 11월 8일자)에서 “병력이 정비되어 있지 않을 때는 ‘민국공법’도 원래 신뢰할 없는 것이다. 약자에 대해서는 공법의 이름으로 이익을 도모하는 일이 적지 않으니 ‘민국공법’은 약자를 빼앗는 하나의 도구”라고 쓰고 있다(姜相圭, 1999 : 39).

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또한 서구 열강이 청이나 조선 등 일본 주변국을 장악하면, 이러한 서구의 움직임이 일본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기에 일본은 이들 지역을 선점하여 일본의 방어벽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조선의 경우 일본과는 달리 『萬國公法』의 양면성을 포함해서 ‘만국공법’을 정확한 틀에서 이해하지 못했다. 既述한 바와 같이 조선은 일본과의 ‘朝日修好條規’를 전통적인 華夷的 질서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고자 했으며, 이러한 몰이해는 조선이 서구 각국과 근대적 조약을 체결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청은 자국이 서구 각국과 조약을 체결할 때에는 청이 독립 국가임을 주장했음에 반해 조선은 서구 각국과 조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조선이 청의 속국임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조선의 입장에서 조선이 청의 ‘屬邦’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명분상의 것이며, 내정과 외교에 있어서는 자주권을 행사하는 국가로서 이른바 ‘하나의 독립된 주권국가’로 존재함을 명시하였다.⁴⁴⁾

이 시기 조선은 한편으로는 중국과의 華夷的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편으로는 대내적 자주권을 주장하면서 새로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이른바 이중적인 관계 구조의 모습을 표방하였다. 이러한 이중적 관계 구조를 정당화하고자 했던 조선의 지식인들의 모습을 다음의 예에서 살펴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유길준은 근대적 공법의 논리를 근거로 청과의 관계를 설명했다. 그는 ‘受貢國’과 ‘贈貢國’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조선은 중국에 조공을 바치는 ‘贈貢國’이지만, ‘속국’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유길준이 주장하는 ‘贈貢國’과 ‘속국’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44) 김현철, 「개화기 『만국공법』의 전래와 서구 근대주권국가의 인식, 『한국학』,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143~144쪽.

- (7)⁴⁵⁾ ① 속국은 조약을 체결할 권리가 없지만, ‘贈貢國’은 다른 독립 주권국과 동등한 수호·항해·통상조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상대국에 각급 사절을 파견할 권리가 있다.
- ② 贈貢國이 다른 독립국과 같은 여러 가지 권리를 행사한다면 당당한 독립 주권국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유길준의 논리는 ‘兩截體制⁴⁶⁾’로 불린다. 이와 비슷한 논의로 김윤식도 청과의 屬邦 관계를 인정하면서 조선이 대내 및 대외적인 주권의 보유를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그가 ‘屬邦 관계’가 조선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⁴⁷⁾ 이 부분에 관해서는 유길준이 ‘민국공법’은 각 나라들의 형세를 지켜주며 약소국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것으로 보았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유길준은 약소국과 강대국 간의 관계는 ‘민국공법’에 의해서 보호된다고 보았는데, 가령 강대국이 자기의 세력을 남용하여 약소국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민국공법’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⁴⁸⁾

이처럼 중국과의 전통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조선이 대외적 주권과 대내적 주권을 보유하는 독립국으로 간주한 논의와는 반대로 어윤중은 자주와 독립의 개념을 분리시켜 조선이 자주는 가능하지만 독립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⁴⁹⁾

45) 유길준(2002: 103)에서 인용.

46) 김현철(2005 : 146)에서는 유길준이 이 ‘兩截’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 1880년대 이후 서구 각국과의 수교이후에도 전통적인 華夷적 질서 하에서 청에 대한 종속관계가 근대 국제법에 의해 새롭게 각색되면서 오히려 강화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47) 김성배, 『한국의 근대국가 개념 형성사 연구』, 『국제정치논총』, 한국국제정치학회, 2012, 21쪽.

48) 김현철, 『개화기 『민국공법』의 전래와 서구 근대주권국가의 인식』, 『한국학』,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142쪽.

49) 아키즈키 노조미(2002 : 34)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자주인 국가는 곧 독립 상태에 있다고 간주되었다. 즉 일본에서는 자주와 독립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주권 국가의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조선이 이중적인 관계 구조 내에서 ‘민국공법’을 적용하고자 했던 시기에는 국가는 내외적으로 주권을 구사하는 것으로 간주 되었으나, 대외적으로는 완전히 독립된 것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당시에 조선이 놓여 있던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아예 제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으며 약소국의 경우는 강대국과 屬邦 관계를 맺으면서라도 침해당하지 않는 이상은 주권 국가로 간주될 수 있음을 주장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청은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내세우면서 내정과 외교에 실질적으로 간섭하기 시작했으며, 사실상 조선의 주권을 침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당시 조선의 개화파는 청의 행위가 종속국과의 도리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근대적 국제 질서 즉 ‘민국공법’에 어긋나는 주권 침해 행위임을 주장했다. 당시 개화파는 조선이 독립된 국가로서 새로운 국제 질서 내에서 각국과 평등한 일원으로 제한 없이 외교 행위를 행하기 위해 이제는 전통적 華夷 질서에서 벗어나 조선이 하나의 독립 주권 국가로 전환되는 것을 추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개화파의 인식은 1884년 갑신정변 당시 청의 종주권 행사를 부정함으로써 청에 대한 종속 관계 폐기의 주장 등을 통해서 구체화되었다. 즉 개화파가 갑신정변을 일으킴으로써 청으로부터의 독립을 도모한 것이다. 이전의 논의와는 달리 개화파는 주권과 독립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주권과 自強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인식했다. 즉,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는 독립 주권 국가라는 지위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부국강병에 힘을 기울이는 것도 필요하다는 인식이었다. 조선의 개화파는 ‘민국공법’의 질서를 인식하기 전에는 조선과 중국과의 관계성, 서구와의 관계성이라는 타자와의 관계에 집중하느라 ‘민국공법’ 질서의 양면성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으나 점차 타자의 존재 방식을 이해함과 동시에 자신의 존재 방식을 다시 고민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부국강병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과 더불어 개화파는 이전에는 부재했던 근대적 국민 관념을 도입하여 국민 국가의 건설을 추구하는 노력이 보이기 시작했다.

박영효는 1888년에 작성한 「건백서」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근대 국민 국가 건설을 주장했다.

- (8)⁵⁰⁾ ① 인민은 모두 평등한 존재이며 등급 없는 같은 종류의 사람들로 간주해야 한다.
- ② 군주의 권위를 제한하여 인민에게 자유의 권리를 주어야 한다.
- ③ 인민에게 교육을 시킴으로써 자기 나라에 대한 인식을 키워야 한다.

박영효의 이러한 주장들을 통해 근대 국민 국가를 건설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조선의 지식인들은 ‘만국공법’을 인식하기 이전에는 부재했던 근대적 주권 사상과 국민 관념을 포함한 근대적 국가 개념을 수용하면서 과거와는 달리 자신의 존재 방식에 주목하게 되면서 부국강병을 의식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의식은 근대적 주권 사상의 수용뿐만 아니라 근대적 국민 관념을 갖춘 국민 국가의 필요성 인식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인식은 결국 근대적 국가의 구체적인 모습을 고민하게 되었고, 근대적 국가의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근대적 국가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소로 구성되는지에 대한 이 시기의 대표적 논의로 ‘국가요소설’이 있다. 김동택⁵¹⁾에 의하면 ‘국가요소설’을

50) 김성배(2012 : 23~24)에서 인용.

51) 김동택, 「近代 國民과 國家概念의 수용에 관한 研究」, 『大東文化研究』,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소개한 인물은 유성준이며 그는 『법학통론』에서 근대적 국가에는 ‘국가, 인민, 통치권’이라는 3개의 요소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당시에 ‘국가요소설’은 여러 학자에 의해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인민, 토지’라는 요소는 모두 공통적으로 사용되어 있으나 논자에 따라 ‘군주, 정치조직, 주권’ 등 다양한 표현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⁵²⁾

전통적 국가 개념에서는 군주가 곧 국가로 인식되었음에 반해 ‘국가요소설’에서는 군주가 국가의 한 요소로서 간주되거나 국가 구성 요소로 아예 간주되지 않은 경우가 확인된다. 이는 앞에서 국민의 존재가 강조됨에 따라 변화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과 주장들은 결과적으로는 근대 전환기에 조선이 『萬國公法』을 접하면서 그동안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관계를 짓누르던 전통적 화이적 질서가 무너지고 그 자리를 새롭게 ‘만국공법’이 채우면서 발생한 국가 개념의 변화에 의한 것이었다.

IV. 결론

이 글에서는 근대 전환기에 ‘만국공법’을 수용하면서 조선에서의 ‘국가’ 개념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먼저 II장에서는 서구 사회에서의 ‘국가’ 개념의 변화와 『萬國公法』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고 『萬國公法』을 기반으로 한 국제질서의 양면성을 논의하였다. III장에서는 ‘만국공법’ 수용 이전의 동아시아에 놓여 있었던 전통적인 華夷的 국제 질서의 성격에 대해 살피고 그것이 국가라는 인

2002, 368쪽.

52) 김동택, 위의 논문, 371쪽.

식을 하는 데에서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개항과 서구의 국가들에 의한 통상 압력에 직면하면서 ‘민국공법’ 질서 수용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조선이 국제 질서의 전환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했고, 새로운 국제질서에 알맞은 국가를 어떻게 인식했는가에 대해서 논의했다. 그리고 근대 전환기에 조선의 지식인들이 『萬國公法』을 경험하면서 근대적 국가 개념의 형성과 그에 따른 여러 주장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전통적인 華夷의 국제 질서에서는 중국 중심의 세계관 속에서 중국과 기타 국가 간의 조공 관계를 맺게 되며, 근본적으로 불평등의 관계를 형성하였다. 조선은 중국과의 근접한 위치 관계에 의해 중국의 정치·군사·문화적 영향을 크게 받았으나 조선도 이를 ‘事大字小’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華夷의 국제 질서에서의 전통적 국가 개념도 정치 공동체를 의미하였으나 근대적 국가 개념의 특징인 주권 사상과 국민 관념이 부재했다. 이것은 華夷의 국제 질서의 구조상 주권 사상이 존재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근대 전환기 ‘민국공법’을 경험하면서 이러한 국가관은 변화의 흐름에 휘말리게 되었다. 전통적인 華夷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국제질서를 이해하고자 했던 단계 즉 이중적인 관계 구조 내에서 ‘민국공법’을 작용시키고자 했던 시기에는 국가는 내외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대외적으로는 완전히 독립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조선이 놓여 있던 상황적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아예 제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으며 약소국의 경우는 강대국과 이처럼 屬邦 관계를 맺으면서라도 침해당하지 않는 이상은 주권 국가로 간주할 수 있음을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한편 주권 사상에 관해서는 개화파가 주권과 독립은 불가분의 관계로 보기 시작하면서 갑신정변 당시 청으로부터의 독립을 도모하였다. 당시에 국가의 존립을 위해 독립 주권 국가라는 지위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부국강병에 힘을 기울이는 것도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겼다.

이것은 조선이 ‘만국공법’ 질서의 양면성을 명확히 인식하여 자신의 존재 방식을 고민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로써 국가의 구체적인 모습을 의식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국가의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즉, 전통적 국가 개념에서는 군주가 곧 국가로 인식되었으나, 국가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소에 의해 구성되는지에 대한 논의인 국가 요소설에서는 군주가 국가의 한 요소로서 간주되거나 국가 구성 요소로 아예 간주되지 않는 주장도 제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으로 ‘만국공법’의 수용이라는 기준으로 그 전후에 국가 개념의 인식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세밀히 논의하고 하였다.

다만 헨리 휘튼의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s』를 윌리엄 마틴이 한문으로 번역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번역의 과정에서 원서와 어떤 차이가 있으며 그것이 어떤 의도에 의한 것인지 등 번역에 관련된 부분까지는 세밀한 논의를 하지 못했다. 이러한 측면에서의 분석도 ‘국가’ 개념을 당시의 사회적 영향과 연결시켜 논의함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이므로 이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참고문헌|

- 姜相圭, 「근대 일본의 「萬國公法」 수용에 관한 연구」, 『진단학보』 87, 진단학회, 1999.
- 김기봉, 「국가란 무엇인가: 개념사적인 고찰」, 『서양사론』 82, 한국서양사학회, 2004.
- 김두진, 「동아시아 華夷論의 變容과 朝日の 萬國公法 수용의 他者認識」, 『한국 정치학회보』 44(3), 한국정치학회, 2010.
- 김동택, 「近代 國民과 國家概念의 수용에 관한 研究」, 『大東文化研究』 41,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2002.
- 김성배, 「한국의 근대국가 개념 형성사 연구」, 『국제정치논총』 52-5, 한국국제정치학회, 2012.
- 김수업, 「세계관 충돌과 1880년대 조선의 근대외교제도 수용」, 『한국정치학회보』 34-2, 한국정치학회, 2000.
- 김용구, 『민국공법』, 도서출판 소화, 2008.
- 김현철, 「개화기 『민국공법』의 전래와 서구 근대주권국가의 인식」, 『한국학』 28-1,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 노르베르트 엘리아스(Norbert Elias), 박미희 역, 『문명화 과정 II』, 한길사, 1999.
- 민희수, 「19세기 말 한국에서의 ‘外交’ 용어의 활용 양상」, 『진단학보』 131, 진단학회, 2018.
- _____, 「한국 근대 『민국공법』 인식의 전통적 기원 -‘公’과 ‘公法’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81, 고려사학회, 2020.
- 아놀드 오스카 마이야, 「국가라는 개념의 역사」, 『광장 110』, 세계평화교수협의회, 1982.
- 아키즈키 노조미, 「스에마츠 지로의 필담록에 나타난 ‘근대」, 『한일공동연구총

- 서』 2,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2000.
- 유근호, 「한·일 국학사상의 중국관과 자국관의 비교」, 『한일공동연구총서』 3,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2002.
- 윤영실, 「헨리 휘튼과 J. C. 블룬칠리의 네이션 개념과 마틴의 번역서 『민국공법』·『공법회통』—국제법과 식민주의적 폭력, 네이션 개념의 관계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사연구』 69, 민족문화사연구소, 2019.
- 유길준, 채훈 역, 『西遊見聞』, 명문당, 2002.
- 이원석, 「민국공법의 두 가지 지평과 구한말 유학」, 『한국학연구』 51,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8.
- 이홍중·공봉진, 「중국 화이사상에서 ‘화이’ 개념의 재해석」, 『세계지역연구논총』 15, 한국세계지역학회, 2000.
- 최종석, 「13~15세기 천하질서하에서 고려와 조선의 국가 정체성」, 『역사비평』 121, 역사비평사, 2017.
- R.Koselleck/W.Conze.u.a., Staat und Souveränität. In, Geschichtliche Grundbegriffe, Bd. 6, Stuttgart, 1978
- Wolfgang Mager, Zur Entstehung des modernen Staatsbegriffs, Akad. d. Wissen. u. Lit. in Mainz, Abn. d. Giestes-u, Sozialwiss, Kl, Nr. 9, 1968

A Study on Changes in the Concept of ‘Nation’ in the Modern Transition Period

Mizukai Yukari · Cho, Chae-hyung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change in the perception of the concept of ‘nation’ in Joseon in the process of seeking national identity while accepting the 『萬國公法』.

Recognition of the concept of ‘nation’ is connected to the national identity of the time, and the national identity of Joseon changed significantly during the transition of modern times by accepting the ‘national public law’ that became the base of modern international law.

Therefore, it is necessary not only to examine the political and social background of Joseon at the time when it was accepted, but also by examining what kind of country Joseon was aiming for at the time, that is, what kind of identity it was trying to establish as a nation. We will be able to better understand the concept of ‘nation’.

To do this, we examined the change in the concept of ‘nation’ in Western society and the nature of the ‘national public law’ on the Chapter II. And we also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traditional international order in East Asia before the adoption of the ‘Public Law

of All Nations’ and examines how it affected the perception of a nation on the Chapter III.

In the transition period of modern times, the intellectuals of Joseon experienced the ‘public law of all nations’ and tried to understand the new international order while maintaining the traditional historical order. It was also recognized that it was necessary to incline, but this new movement was due to a change in the concept of ‘nation’.

Key words : concept of ‘nation’, Modern Transition Period, 『萬國公法』, order of 華夷, modern nation, sovereignty, people

미즈카이 유카리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61186) 광주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전자우편: 13174pfu@gmail.com

조재형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61186) 광주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전자우편: chochaehyung@jnu.ac.kr

이 논문은 2021년 8월 29일 투고되어 2021년 10월 6일 심사 완료하였으며,
2021년 10월 13일에 게재 확정 통보하였음.